

장기요양기관 의무교육 안내

교육 내용	대상기관	법적근거	교육시기	교육방법	비고
노인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연1회, 4시간 이상	집합·방문·인터넷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연1회, 1시간이상	자체·인터넷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연1회, 1시간이상	자체·인터넷 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연1회	자체 교육	(사고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성희롱 예방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남녀고용평등법	연1회, 1시간이상	교육자료 게시·배포 및 자체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장애인고용법 제5조	연1회, 1시간이상	교육자료 게시·배포 및 자체 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연1회	위탁교육 자료 게시 또는 배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작성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연 8시간 이상	집합·인터넷 교육	과태료 20만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연1회, 1시간이상	자체·인터넷 교육	-
자살예방교육 (2025년부터~)	장기요양기관 (기호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 제17조제1항	연 1회 (인식개선교육 또는 생명지킴이교육 중 택1)	자체·집합·인터넷 교육 (교육결과 입력 https://edu.kfsp.or.kr/)	-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항	연1회, 1시간이상	자체·인터넷 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년부터~)	장기요양기관 (기호 1,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매2년마다, 8시간 이상 (ex. 홀수 출생자 홀수년도)	대면·인터넷 교육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교육 (2025년~)	노인요양시설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연1회, 1시간이상	자체·인터넷 교육	-

장기요양기관 법정 의무교육

I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제1조2(정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61조의2(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 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노인지킴이)'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15771389.or.kr

*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학대피해노인의 파해 사실 부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노인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 (교육실적제출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직장교육(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직장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홈페이지 (15771389.or.kr) 등재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활용하여 직장 내 자체 교육 실시

자료형태	교육자료 명
동영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국민 대상)
	2021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시설종사자 대상)
PDF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설치 담당 공무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군 종사자
	의료인,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직군 종사자
	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성폭력 직군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직군 종사자
PPT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전국민편)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dile.or.kr) 플랫폼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 실시

운영플랫폼	과정명	재생시간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120분	- 인권과 학대의 이해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공통)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60분	- 고령사회와 우리의 문제 - 누구나 나이 든다. - 존중과 배려 - 노인 학대 예방 - 함께하는 우리,나비새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GSEEK)	(시설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0분	-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인권 존중 케어에 대해 알 수 있다.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함양할 수 있다.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의미와 특성을 알 수 있다.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대처방안을 알 수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운영 플랫폼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

□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연 1회 이수 필요

□ **신청방법**: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 **교육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edu.kohi.or.kr)

III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시설장, 종사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별 칙: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시설의 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¹⁾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²⁾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2) 복지부 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공공/민간 교육 사이트

- 강원도교육연수원(2021 학교지원 분야별 직무연수2)
- 서울시인재개발원(e-[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기본교육)
- 비상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비상원격평생교육원(한 번에 듣는 교원 법정 의무연수, 학생사안처리의 정석-아동학대, 학대폭력, 생활지도)
-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법정의무교육 한 번에 이수하기)
-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교사들이 먼저 알아야 할 3대 폭력 예방교육)
- 하이컨텐츠원격교육연수원(ONE-STOP 법정의무교육 Package),
- 한국교원연수원(아동학대 예방교육)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지원 등)

- 집합교육: 복지부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IV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시설장,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V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내 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교육 이수기간:** 매년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보전

·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3~12	복지부 직원

※ 모든 교육은 실적 제출 요함(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 증빙서류)

- 인터넷 교육: 수료증

- 집합교육: 교육 사진

VI

자살예방 교육

- ☐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1번코드), 재가노인복지시설(2번코드),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등은 시설장 및 소속 종사자에게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 **교육 이수기간:** 매년 12. 31.까지 1시간 이상
- ☐ **교육내용:** ①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② 자살예방법 제17조
-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 ① 집합교육 진행 시 기관로그인(교육담당자 가입) 후 교육센터 -> 대면교육 -> 교육개설(관리 • 진행)
- ② 강사찾기 시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정보확인)
- ③ 강사섭외 시 교육개설에서 섭외요건 작성(강사비, 요청사항 등) -> 신청 목록 중 강사선택
- ☐ **결과보고:** '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https://edu.kfsp.or.kr/perform/common/greeting.do>)
- ① 교육실시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보고
- ☐ 자살예방교육 FAQ(더 많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주소(<https://edu.kfsp.or.kr/common/menu/html/900001005/detail.do>)
- Q. 자살예방교육 중 '생명지킴이'와 '인식개선' 중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 A. 자살예방교육의 종류는 '생명지킴이', '인식개선' 교육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에 교육실시기관은 두 개 교육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종류는 홈페이지의 교육 프로그램-프로그램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Ⅶ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 **근 거:**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내 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노인요양시설(1번코드) 종사자 포함**)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교육 이수기간:** 매년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②인신매매등 범죄의 주요 내용 ③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④인신매매등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 ⑤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에 관한 내용 ⑥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
⑦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온라인교육)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공동활용) 교육 이수

※ 본 안내문 [붙임 2] 교육 자료 활용 안내 및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Q-4, 5 참고

※ 온라인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가능여부를 신청 전 확인하고 가급적 12월 전에 수강완료하도록 권고

(집합교육)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기관·시설장 책임하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집합 교육을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의무자(민간 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별도 제작한 교육 콘텐츠 활용은 불가

○ (교육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작 교육자료* 등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교육자료 → 인신매매등 예방 교육자료에 게재된 교재

□ 결과보고

(신고의무자 소속된 기관·시설)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서(별도서식)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안내받은 시·군·구 등 관할 부서로 제출

* (온라인교육) 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

(집합교육) 현장사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경우 송출화면 캡처본 등) 및 참석자 서명부 등 취합 기관에서 세부 증빙 요건 설정 가능

□ 교육영상·요약자료(pdf) 게시

구 분	자료 활용(집합 교육 시 활용)	비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교육영상 및 요약집 다운로드 가능	수료증 발급 불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	교육 과정명으로 검색 후 영상 시청	수료증 발급 불가

□ 온라인 교육 사이트

사이트	주 소	교육대상
여성가족부 나라배움터	mogef.nhi.go.kr	공무원
온국민평생배움터	www.all.go.kr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수강, <수료증> 발급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4050	sll.seoul.go.kr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포털	edu.stop.or.kr * 수강 신청 후 승인 필요, 사전 확인 및 접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종사자

□ 교육자료 활용 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456),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2)